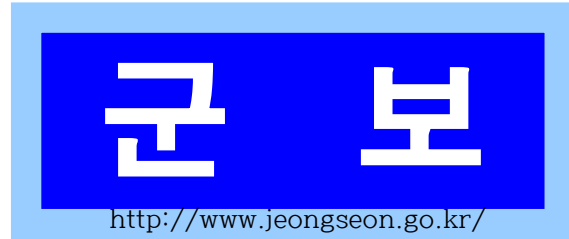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60호 2012. 2. 1. (수)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2-6호 도로명주소 고시..... 1
- 정선군고시 제2012-9호 병방산 군립공원 조성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 고시..... 2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2- 51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 정선군공고 제2012-52호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안」 입법예고 7
- 정선군공고 제2012-55호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안내..... 12
- 정선군공고 제2012-57호 2012년 노후주택 신·개축 융자사업 안내..... 16
- 정선군공고 제2012-58호 2012년 정선군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계획 공고..... 19
- 정선군공고 제2012-59호 정선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5
- 정선군공고 제2012-65호 2012년 강원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29
- 정선군공고 제2012-70호 「정선 해피아리아파트」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 32
- 정선군공고 제2012-71호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4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2-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1. 20.

정 선 군 수

- 도로명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와평1길 6외 1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내역 : 정선군청 민원봉사과 비치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민원봉사과(☎560-218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01.2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정선군고시 제2012-9호

병방산 군립공원 조성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 고시

정선군고시 제2011-110호(2011.09.30)로 결정 고시된 병방산 군립공원 공원계획 결정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31일

정 선 군 수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정선군 정선읍 북설리 산 10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휴양 및 편익시설
- 명 칭 : 쉼-와이어(자연체험시설) 설치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단위 : m²)

시설명	공 원 획 결 정(m ²)		공원사업 시행계획 인가(m ²)			비 고
	세부시설명	면적·규모	기시행	금회시행	향후계획	
휴양편익 시 설	쉼-와이어 자연체험시설	건축면적 912	-	건축면적 912	-	정선군고시 제2011-110호 (2011.09.30)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성 명 : 정선군수(녹색환경과장)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착 수 일 :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12. 6.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불임

사.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기본구조 내역 : “별도비치”

※ 공원사업 시행계획의 내용과 관계서류를 정선군 녹색환경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줍니다. 공원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 정선군청 녹색환경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033-560-2330, 정선군청 녹색환경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1) 토지 (짚와이어 자연체험시설)

(단위 : m²)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정선읍 북실리	산105	임	8,529	8,529	용탄리 25	고용균			
2	정선읍 북실리	산106	임	3,769	3,769		산림청			
3	정선읍 북실리	산104-6	임	1,683	1,683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3-2 영신빌딩 301호	더리치 컨설팅			

공 고**정선군 공고 제2012-51호****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6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 나. 출산(임신) 여성공무원에게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자 근무환경 개선 및 출산 장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변경함
- 나. 임신 여성공무원에게 특별휴가 부여
 - 종전 만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던 것을,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 확대 적용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560-2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중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하고, 같은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특별휴가) ① (생략)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중의 <u>여자공무원</u> 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 <u>여성공무원</u> ----- ----- -----.
③ <u>여자공무원</u> 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u>여성공무원</u> ----- ----- ----- -----.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u>여자공무원</u> 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④ ----- <u>여성공무원</u> ----- ----- <u>받을</u>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정선군 공고 제 2012-52호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월 26일

정 선 군 수

1. 제정취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 하는 주민에게 일정한 포상을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서 주민의 제보 활성화를 통하여 운수사업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고 및 포상 내용과 금액을 정함(안 제 2조)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20만원
- 대여자동차(렌트카) 유상운송 행위 20만원
- 화물자동차(콜벤) 여객운송 행위 10만원
- 자가용자동차 등 의 노선운행 행위 5만원
- 타지역 택시 불법행위 3만원

나. 신고 방법을 정함(안 제4조)

-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법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

○ 포상금의 지급 방법,시기 등을 정함(안 제6조)

- 신고행위를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처분청의 처분결정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로부터 신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14일 이내에 지정계좌로 입금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방문, 우편 또는 FAX로 제출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우편번호 233-701)

－ FAX : 033-560-2174

－ 문의 : 033-560-2364

붙임 :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안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및 포상) ①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1.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2. 대여자동차(렌트카) 유상운송 행위
3. 화물자동차(콜밴) 여객운송 행위
4. 자가용자동차 등의 노선운송 행위(모텔, 찜질방, 펜션 등)
5. 타 지역 택시불법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는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의 위반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 20만원
2. 대여자동차(렌트카) 유상운송 영업행위 : 20만원
3. 화물자동차(콜밴) 여객운송 사업행위 : 10만원
4. 자가용자동차 등의 노선운행 행위(모텔, 찜질방, 펜션 등) : 5만원
5. 타 지역 택시불법 행위 : 3만원

제3조(신고자) ①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 ~ 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4조(신고방법)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반일시, 장소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법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방

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차량번호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

제5조(접수 및 처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시 별지 서식의 대장에 기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신고행위를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처분청의 처분결정(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 이상)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로부터 신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대상

[illegible]

정선군공고 제2012-55호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안내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학자금을 지원하오니, 해당 자격 및 요건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폐광지역진흥지구내(태백, 삼척, 영월, 정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 지원기준
 - 신입생 : 300만원(1학기限), 재학생 : 200만원(학기당)
 - ※ 학자금 지원 : 입학·등록금, 수업료, 기성회비 금액중 학기별 지원한도 금액
(기숙사비, 학생회비 등은 제외)
- 지원자격 및 요건
 - 거주지 : 사업대상자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학자금 신청일 기준(2.29일) 6개월 이전에 폐광지역 진흥지구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
 - 학점 및 성적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위 점수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안될 경우(교환학생 등) 성적이 산출된 최근 학기 기준
 - * 성적 백분위 점수는 소속대학별 학사운영규정 산출방식 적용
- 신청기간 : 2012. 2. 1. ~ 2012. 2. 29.
- 신청장소 : 해당 읍·면 사무소

○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명의	비 고
1	공통사항	학자금 신청서 및 서약서		
2		성적증명서 (재학생)	본인	백분위 점수 기재
3		재학증명서	본인	
4		입학금·등록금 납부 영수증 사본	본인	
5		주민등록등본	부모, 본인	‘11.9.1일 이전일에 주민등록되어있을 것.
6		통장사본	부모	보호자(세대주)통장
7	복지제도 증명서 발급가능한 경우 해당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부모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부모 또는 본인	명의가 부모인 경우 부모와 본인의 관계 증명 가능한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필수
		한부모가족 증명서 (부모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부모 또는 본인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부모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부모 또는 본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부모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부모 또는 본인	
		자활근로자 확인서 (부모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부모 또는 본인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부모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부모 또는 본인	
	복지제도 증명서 발급이 되지않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건강보험료 월납부확인서 (‘11.9월~‘12.2월)	부,모 모두	
		건강보험증 사본 (‘11.7월이후 발급된것)	부,모 모두	피부양자 등재여부 확인(형제,자매포함)

건강보험료에 의한 차상위계층 인정 기준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3	2,325,580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A*1.2)	664,025	1,130,636	1,462,648	1,794,660	2,126,672	2,458,684	2,790,696
월 건강보험료 (A*1.2*0.029)	19,257	32,788	42,417	52,045	61,673	71,302	80,930

‘11년 9월~’12. 2월 부모 및 본인 합산(형제, 자매 피부양자 포함) 월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실적이 각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6호(2011.8.31)

○ 대학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
 -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 타 장학금과의 중복수령 배제

- 타 장학금 범위 : 국가, 지자체 또는 민간장학재단 장학금 일체
단, 본인 근로의 대가성으로 지급받는 장학금(근로장학금)과,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받는 장학금은 예외 인정

○ 학자금 보전(추가지급)

- 타 장학금 수령액이 본 학자금 보다 적을 때에는 신청에 의해 그 차액
만큼 추가 지급 (단, 학기별 지원금액 한도)

○ 중복수령의 조치사항

- 해당학기 지원 학자금의 전액 반환 및 향후 지원중단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수혜시 본 학자금으로 상환 조치
- ※ 미상환시 향후 한국장학재단의 지원자격 중단으로 학생 불이익 우려
학자금 신청시 중복 수령을 하지 않겠다는 학생의 서약서 제출 의무화

○ 학자금 지원 중단 및 반환

-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등록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기 지급한
학자금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에 즉시 반환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읍·면사무소 및 군청 지역경제과(☎
560-2356), 도 탄광지역개발과 (☎249-27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26일

강 원 도

【붙임 1】

‘12년 1학기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대학 학자금 신청서

학 생 인적사항	이 름	(남,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휴대전화			일반전화	
	학 교 명			전 공	
	학 번		(2,3,4,5,6)년제	다닐학기	학년 학기
보 호 자 인적사항	세대주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저소득층유형			학생과의 관계	
	휴대전화			일반전화	
신 청 내 역	신청금액	금 원 (₩ 원) ※만원미만 절사			
	입금계좌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본인은 강원도 비촉무연탄관리기금 학자금을 지원받는 학생으로서 타 기관 장학금을 이중 수혜한 사실이 없으며, 학자금 지원을 받는 동안 이중 수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강원도 저소득층 학자금 수혜를 위해 상기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및 기타 인적사항)를 활용·보유하고 한국장학재단 이중수혜시스템에 등록·공유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중수혜시에는 지원받은 학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확약하며, 향후 학자금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학적변동(퇴학 등)으로 인해 잔여등록금 반환받는 경우에도 지원받은 학자금을 강원도 반환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서약하며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 학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2. . .

신 청 인 학부모 (서명)
 학 생 (서명)

강원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신청서,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비발급자 : 건강보험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각 1부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여부, 거주지역,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일, 첨부서류 구비확인
읍·면 담당자 (인)

정선군공고 제2012-57호

2012년 노후주택 신·개축 용자사업 안내

폐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신·개축 용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해당 자격 및 요건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폐광지역진흥지구내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

○ 위탁기관 : 농협중앙회

※ 신청전 위탁기관에 담보능력 등 사전상담 후 신청

○ 용자조건

사업명	용자한도	상환방법	금리 (%)	담보 제공
노후주택 신·개축	4천만원 한도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	1	부동산 담보원칙

*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에는 주거비율이 40%이상을 넘어야 함.

* 사업 완료시 사업자 청구에 의해 보조금(900만원/동) 별도 지급.

○ 신청기간 : 2012. 2. 1. ~ 2012. 2. 24.

○ 신청장소 : 해당 읍·면 사무소

○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사업계획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및 군청 지역경제과(☎560-23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일

정 선 군

【붙임1】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 업 명	2012년 노후주택 신·개축 사업			
보조사업자	주소 :		성명 :	
보조사업목적	폐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보조사업내용	노후주택 신·개축			
사 업 기 간	2012. 월 ~ 2012. 월			
사업계획서	“별첨”			
보 조 사 업 의 소 요 경 비 (단위:천원)				
총 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자부담	기 타
				-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2. . .

신 청 인 : (인)

정선군수 귀하

【붙임2】

보조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 사업명 : 노후주택 신·개축사업
- 위치 : 정선군 읍면 리 번지(가구)
- 사업비 : 금 원(금 원)
- 사업기간 : 2012. . . ~ 2012. . .
- 사업량 : 신축 or 개축 1동 m²

2. 사업목적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3. 사업 추진계획

- 사업량(면적) : 신축 or 개축 동 m²
- 착공 예정일 :
- 준공 예정일 :

4. 사업비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조금	용자금	자부담	비고

정선군공고 제 2012 - 58호

2012년 정선군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계획 공고

사회복지기금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 정선군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1월 일
정 선 군 수

1. 사업기간 : 2012. 3. 1 ~ 2012.12. 31

2. 지원규모 : 총 96,000천원

- 가. 자활계정 : 25,000천원
- 나. 장애인복지계정 : 14,300천원
- 다. 아동복지계정 : 8,000천원
- 라. 노인복지계정 : 29,700천원
- 마. 여성발전계정 : 19,000천원

3. 지원대상사업

계 정 별	지원대상사업	비고
자활계정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 ○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장애인복지계정	○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 장애인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사업 ○ 장애인단체 육성사업	
아동복지계정	○ 아동복지 증진 및 육성사업 ○ 아동교육, 상담 및 지도활동 관련사업 ○ 아동학대 및 비행청소년 예방사업	
노인복지계정	○ 노인복지 증진사업 ○ 효도,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 노인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관련사업 ○ 노인단체 육성사업	
여성발전계정	○ 여성복지 증진사업 ○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관련사업 ○ 여성단체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사업	

《제외대상》

- 구체성 결여 등 사업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 사업내용 구성에 있어 수혜대상 등 불분명한 사업
- 연구, 조사, 장학사업 등 단순 재정적 지원사업이나 자산구입 위주의 사업

4. 지원사업 신청자격

가. 정선군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단위 민간단체 및 공익기관

나. 자활·장애인·아동, 청소년·노인 및 여성복지분야, 기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관련단체 및 기관

《제외대상》

- 군단위 민간단체 및 기관의 하부조직인 지회, 지부
- 읍면단위 민간단체 및 기관
- 순수 종교활동 단체, 영리추구 단체 및 단순한 친목단체

5. 신청기간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2. 2. 8. ~ 2012. 2. 17.

나. 접수장소 :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신청자 직접 내방 접수

6. 신청서류

가. 기금보조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나. 사업계획서 및 단체(기관)소개서 등 1부 [별지 제2호서식]

7. 심사 및 통보

가. 정선군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사·선정

나. 결과통보 : 2012. 2월(개별통지)

8. 기금보조금 지급 및 정산

가. 보조금 지급 : 심사결과 지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교부 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예금통장 사본 등을 선정된 사업의 계정별 담당부서에 제출 후 교부결정(서식 홈페이지 참조)

나. 정 산 : 사업완료시 사업추진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음.

나. 기타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과(☎560-2311)로 문의바람.

[별지 제1호서식]

기 금 보 조 신 청 서

기관(단체)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의 목적					
사업의 내용					
소 요 경 비 재 원					
총사업비	기금보조금	자체부담금	후 원 금	기 타	
사업 기간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제15조, 제1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금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타 필요한 관계서류					

[별지 제2호서식]

【 사 업 계 획 서 】

1. 목 적

2. 주요내용

※ 사업내용을 개조식으로 세부사항까지 기술

3. 참여인원 및 사업기대효과

※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4. 보조금 신청내역

(단위:천원)

적 요 (사업 및 품명)	계	자체부담	기 타			산출기초
			소 계	군비보조	기(부)금등	
						※ 세부적으로 각 항목별 산출 근거 제시

5. 기관(단체)활동 실적

사 업 명	활 동 내 용	비 고
○ ○ ○	○ 일시 : ○ 장소 : ○ 참여인원 : ○ 집행금액 : ○ 행사내용 :	※ 사업성격 및 일자순으로 전체 기재함

※ 각종자료, 사진등 별지 첨부

6. 기관(단체)구성 현황

임원진	회원수(명)				비고
	계	정회원	준회원	기타	
회장: 부회장: 총무:					※ 회원자격등

7. 기타 참고사항

- 사업시행후 수입금에 관한 보조금외 부담경비사항(계획)등
- 설립근거 법령 및 조례 사본
- 단체의 정관(회칙)

정선군 공고 제2012-59호

정선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월 26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가. 「정선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의 여비중 숙박비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표 숙박비(1야당)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단위 : 원)

구 분	현 행	변 경
제2호	30,000	40,000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8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과(전화 560-2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정선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정선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표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40,000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1】 제1호 철도운임 : 1등급 선박운임 : 1등급 항공운임 : 정액 자동차(버스)운임 : 정액 숙박비(1야당) : 46,000원(지방자치 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철도운임 : 1등급 선박운임 : 1등급 항공운임 : 정액 자동차(버스)운임 : 정액 숙박비(1야당) : <u>30,000원</u>	【별표1】 제1호(현행과 같음) ----- ----- ----- ----- ----- ----- 제2호 철도운임 : ----- 선박운임 : ----- 항공운임 : ----- 자동차(버스)운임 : ----- 숙박비(1야당) : <u>40,000원</u>

정선군 공고 제2012-65호

2012년 강원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2. 2. 2.

정 선 군 수

1. 공모기간 : 2011. 2. 2(목) ~ 2. 10(금)
2. 공모대상 :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참여·신청가능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공동체 현황, 마을공동체 회원 명단
3. 대상단체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마을회, NPO등 지역단위의 소규모 공동체로서 법인인 자
4. 선정규모 : 1개 단체(정선군)
5. 지원범위 : 공동체당 80백만원 범위내
(1차년도 50백만원, 2차년도 30백만원)
6. 선정방법 : 최우수 2개 단체이내 선정후 강원도에 추천
※ 제출한 서류는 외부유출 및 반환되지 아니함
7. 선정절차 : 정선군(1차심사 및 추천) ⇨ 강원도(최종선정)
8. 결과발표 : 2012. 2. 29(최종선정 단체에 한하여 통보)
9. 제외대상 단체
 -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 사업성이 없는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추진하는 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10. 선정단체는 의무적으로 「이행보증보험」가입

- 마을기업육성사업의 적절한 이행 담보와 국가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보험계약자는 ‘지원받는 마을기업’, 피보험자는 시군
- 보증내용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정부보조금 지급보증’으로 함

11. 사업신청 및 접수 : 정선군청 지역경제과 방문접수

12. 문 의 처 : 정선군 지역경제과 ☎ (033)560-2154)

「마을기업」이란?

-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의미한다.

대상사업(예시)

1. 지역자원 활용형 마을기업

○ 지역특산물·자연자원 활용사업

- 지역관광, 농촌체험, 전통공예 등 지역특화 아이템 발굴·추진
- 지역자원 및 특화브랜드 개발·홍보 등 커뮤니티 마케팅 추진
- (예시) 광주 광산구 울금영농조합법인, 지역특산물인 ‘울금 가공판매’

○ 전통시장·상가 활성화사업

- 구도심 및 전통시장 상가의 수익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해체위기의 지역상권 복원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 (예시)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 상가번영회, ‘EMS이용 해외물품 발송대행’ 사업

○ 공공부문 위탁사업

- 지역축제, 공원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학교급식 등을 지역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로 확대 활용

2. 친환경·녹색에너지 마을기업

○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 음식쓰레기, 폐자원(헌옷, 폐금속, 폐식용유, 장난감 등) 재활용 등 친환경 녹색사업 발굴·추진
- (예시) 경기 하남시 폐장난감 및 어린이 도서 재활용 ‘하남장난감 도서관’ 운영

○ 자연생태관광·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 녹색성장 자연에너지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 속에서 실천
(예시) 울산 중구 태화강방문자센터‘여울’ 운영

3. 생활지원 · 복지형 마을기업

○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

-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에 대한 복지·간병 등 사업 발굴·추진
-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방과후 아이 돌보미사업 등 중점추진
(예시) 경기 오산 ‘원더풀 휴 세탁소’ : 장애인 일자리 창출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이 직접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집중 추진
(예시) 경남 하동 ‘한구자리 채울’ : 이민여성 9명 참여,
다문화음식점 운영 및 통번역, 이주여성 정착지원

정선군 공고 제2012-70호

「정선 해피아리아파트」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

- 위 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10길 28-23번지 일원
 ■ 목 적 : 폐광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신축한 아파트임
 ■ 공급규모 : 5년 공공임대아파트 2개동 42 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01동 : 47A 16세대, 102동 : 47B 26세대)
 ■ 공급대상

구 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형별	세대당 계약면적 (㎡)					공급 세대수		최고 층수
				공급 면적			기타 공용	합계 (계약면적)	계	일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계					
계									42	42	
101동	2012000059-01	47.1800A	47A	47.18	19.74	66.92	2.28	69.20	16	16	15
102동	2012000059-02	47.1800B	47B	47.18	20.40	67.58	2.28	69.86	26	26	14

※ 대지면적 : 6,719.46㎡ (세대당 면적 : 101동 47A형 44.80㎡, 102동 47B 45.23㎡)

- ① 신청주택은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접수 합니다.
- ② 입주 예정시기는 2012년 3월 20일입니다.
- ③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 등 공용면적 입니다.
- ④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⑤ 층수는 동별 최고층이 14층 및 15층이며,난방방식은 개별난방(가스),구조는 벽

식,지붕은 평지붕이며, 부대시설로는

경로당 (남,녀 구분), 관리사무실, 경비실이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주택형 / 동	층 별	임대 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입주(예정)시기
		계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47.1800A (101동)	전 층	18,400	10,000	8,400	220,000	2012년 03월
47.1800B (102동)	전 층	18,900	10,000	8,900	220,000	2012년 03월

※ 입주자의 희망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 전환 가능하며, 보증금 납부는 고지서에 의거 금융기관에 납부

① 임대기간 : 5년

101동 → 47A 16세대 . 102동 → 47B 26세대는 5년 임대 기간 종료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② 임대차계약기간은 3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임대차계약을 갱신 함

③ 월 임대료는 입주 기간중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에 정한 20분의1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음

④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 “정선군수”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원금만 반환함

⑤ 입주예정시기는 2012.3, 20까지이며, 이후 입주시에는 2012, 03, 20일 입주한 것으로 간주처리 됩니다.

⑥ 임대보증금은 계약시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 후에는 월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

⑦ 월임대료는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에 따른 소정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해 각각 일할 계산됩니다.

⑧ 임대료는 월단위로 산정 합니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합니다.

⑨ 입주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 합니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 합니다.

■ 임대주택 분양 전환 기준

- ①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 ②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③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 ④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장기 수선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주택형	택지비	건축비	계
47.1800A (101동)	27,334,000	69,269,200	96,603,200
47.1800B (102동)	27,594,700	69,929,860	97,524,560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임

■ 신청시 유의사항

- ① 공급대상자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일(2012.01.30)”현재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②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입주자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함.
- ③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1순위 청약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④ 과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
만 1·2·3순위로 청약이 가능함.
- ⑤ 국민주택에 당첨된 분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청약자 본인(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

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⑥ 부적격 당첨된 경우 부적격당첨자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단, 당첨제한기간 경과 후 당해 청약통장 사용 가능)

⑦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⑧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⑨ 국민주택 신청시 무주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당첨자 중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무주택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과 함께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됨

⑩ 동일한 청약통장 계좌로 다른 주택에 이중 당첨되어 한 세대에서 2주택 이상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만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

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⑪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이상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함.

☐ 일반공급 --- 신청자격, 순위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총 42세대 : (101동 47A : 16세대), (102동 47B : 26세대)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01.30) 현재 정선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 까지 무주택인 자

순 위	순 위 요 건
1순위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입주자 선정방법

- ① 1순위 및 2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공급순차”에 의거 공급한다.
- ② 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③ 호수 배정은 전산관리 지정기관의 프로그램으로 특별분양과 같이 일괄하여 배정 추첨함

※ 공급순차

순차	내 용
가	·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 납입횟수가 많은 자
마	·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단) 공급순차 “바항”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는 추첨에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

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경우

5. 20제곱미터(6평)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제곱미터이하 주택을 2호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6.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200㎡미만이거나 2층이하)로 해당 정선군으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① 주택청약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정착을 위하여 반드시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

하시어 인터넷뱅킹 가입 및 전자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주택청약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의 재사용

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대상자	청약일자	접수 장소 및 시간	
		인터넷	창구
1순위	2012.02.08	• 접수시간 : 08:00~17:30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	• 창구접수 : 09:00 ~ 16:00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나, 노약자 장애인은 은행 창구 청약가능
2순위	2012.02.09	-국민은행외 은행 청약통장가입자 : www.ap2you.com	
3순위	2012.02.10	• 접수시간 : 08:00~17:30 -국민은행 청약신청금 보유자 : www.kbstar.com -국민은행외 은행 청약신청금 보유자: www.ap2you.com	

- ① 일반공급은 1순위, 2순위, 3순위 일자별로 각각 접수를 하며, 예비당첨자를 감안하여 인터넷 전체접수 건수가 200%를 초과하면 익일 접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후순위 접수일에 미달이 되어도 선순위자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 ② 창구 청약시 1순위, 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3순위는 청약자 거래은행에서 신청 가능함
- ③ 당첨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www.ap2you.com (금융결재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정선군에서 별도로 우편발송을 할 계획입니다
- ④ 예비입주자는 일반공급세대수의 10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합니다.

■ 청약신청 방법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안내

구 분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서 - 1·2 순 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통장 순위가 발생한 분 - 3 순 위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서비스 가입자 중 बैं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 (1회 이체 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이용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부동산 ⇒ 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금융결재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에 접속 ⇒ 인터넷청약 개인고객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노약자,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배우자 포함)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1, 2순위자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자 : 청약자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 비치)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1, 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 2순위에 한함) 또는 배우자, 본인 서명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구비 - 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구분	구 비 사 항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위임용) 1통 ※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처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은 생략 가능

■ 3순위 청약신청금

구 분	금 액	신청금 납부 방법
인터넷 신청시	100만원	- 인터넷 청약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자동출금되며, 당첨자발표일 익영업일 출금계좌로 반환됨.
현장접수시 (청약자 거래은행 본·지점)		* 금융기관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바랍니다.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①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2012.02.20(월)] 이후 평일 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② 환불장소 : 청약신청시 청약자가 지정한 거래은행 계좌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에 자동 이체됨. 환불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

③ 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위임장

④ 3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⑤ 3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당첨자발표, 입주자 서류 제출,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① 당첨자는 아래 당첨자서류 제출 기한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
- ② 당첨자명단은 우편발송을 통하여 개별 통지함
- ③ 계약체결은 사전에 문서로 안내함

청약대상자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장 소 (당첨자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일반공급	2012.02.17일	2012.02.24 일한	2012.02.27- 2012.02.29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재산관리

※ 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군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인터넷·ARS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구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舊주택은행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기간		2012. 02. 17(금) ~ 2012. 02. 26(일) (10일간)	
이용 방법 및 절차	인터넷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당첨사실조회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청약 ⇒ 당첨확인
	전화 ARS	☎ 1369(서비스코드 : 5#)	☎ 1588-9999 (서비스코드 : 913)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 서비스이므로 반드시 당첨자발표 장소 등에서 당첨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당첨자 제출서류 안내

○ 공통 안내사항

- ①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
- ②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③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④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입주를 취소하며, 부적격 입주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⑤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든 대리신청자로 간주됨(직계존비속 포함)

■ 일반공급 신청시 제출서류

구 분	해 당 서 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일반공급	① 주택공급신청서	· 접수장소에 비치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④ 도장	· 본인 신청시는 서명이 가능함
	⑤ 청약저축 순위(가입)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⑥ 해당자 추가서류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기간, 거주자,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초본 1통	
	※ 제3자 대리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외의 모두 대리신청자 ①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주택공급신청용) ② 청약자의 인감도장 ③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④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생략 가능)	

■ 계약체결 구비서류 안내

①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계약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② 입주자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및 배우자 계약체결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 계약금(고지서에 의거 금융기관에 납부금 준비) - 당첨자의 인감증명 1통 (용도 : 아파트계약용) - 당첨자 인감도장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부적격자 통보받은자	- 해당 소유주택에 대한 소명자료·건축물 등기부등본, 무허가건물 확인서, 기타 무주택 입증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됨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 계약금(고지서에 의거 금융기관에 납부금 준비) · 당첨자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당첨자 인감도장 · 위임장 1통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는 주택공급신청 접수증을 출력하여 서류 제출시 제출 하여여 합니다

■ 유의사항

① 1·2·3순위 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고, 1·2순위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능한 자 포함)

②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간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주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③ 입주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기타 부정한 방법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입주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④ 본 주택 신청자는 신청 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입주자”로 분류될 경우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불이익(입주 및 계약 취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⑥ 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입주된 날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전매·전대가 금지되며,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⑦ 문서위조 등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자 또는 임차권을 양도받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 22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⑧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2)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m^2 를 평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단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m^2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2 \times 0.3025$]

⑨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⑩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자의 통장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⑪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정선군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⑫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에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 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⑬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 가능합니다.

⑭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기준 등 승인,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의하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공통사항>

① 1세대 1건만 신청가능하며 세대주(신청자)의 중복청약 또는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가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당첨자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특별공급 신청자는 향후 다른주택에 특별공급자격으로 신청 불가)

②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함

문 의 처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 (560 - 2302)

■ 시 행 사 : 정선군

■ 시 공 사 : 창경종합건설(주)

■ 감 리 사 : (주)동화종합건축사 사무소

정선군 공고 제2012-71호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2년 1월 31일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가.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 본문 중 상명하복의 권위적인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를 “직무상의 지시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로 하고, “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은”을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으로 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560-22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붙임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하며”를 “직무상의 지시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로 하고, “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은”을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복무)① (생 략) ② 이장은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u>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하며</u> <u>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은</u> 준수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3조(복무)① (현행과 같음) ②이장은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u>직무상의 지시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u> 준수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③ (생략)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시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시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이 제2항에 따라 시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